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2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21.

발의자 : 황주홍 · 이찬열 · 오세정

김철민 · 송기석 · 김관영

김경진 · 윤영일 · 김종회

유성엽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함.

그런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,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,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 및 제25조).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·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

제2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 내지 제3항의”를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”로 한다.

④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(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의 지정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조의2(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 의 지정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를 지정한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·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
③ (생 략) 제25조(과태료) ① ~ ③ (생 락) <u><신 설></u>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제25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----- ----- -----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	

통신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-----.